

보수 규정

제정	2006. 04. 14. 규정 제9호	개정	2017. 10. 20. 규정 제144호
개정	2007. 02. 22. 규정 제20호	개정	2017. 12. 12. 규정 제147호
개정	2008. 03. 18. 규정 제30호	개정	2018. 03. 14. 규정 제161호
개정	2008. 12. 23. 규정 제36호	개정	2018. 12. 28. 규정 제171호
전문개정	2009. 07. 13. 규정 제46호	개정	2019. 03. 29. 규정 제181호
개정	2011. 03. 11. 규정 제63호	개정	2019. 07. 09. 규정 제189호
개정	2012. 03. 12. 규정 제75호	개정	2020. 02. 13. 규정 제204호
개정	2012. 07. 09. 규정 제79호	개정	2020. 05. 25. 규정 제212호
개정	2013. 03. 27. 규정 제87호	개정	2021. 06. 15. 규정 제225호
개정	2015. 01. 28. 규정 제111호	개정	2022. 01. 07. 규정 제235호
개정	2015. 09. 23. 규정 제116호	개정	2022. 04. 04. 규정 제236호
개정	2016. 01. 18. 규정 제121호	개정	2024. 07. 17. 규정 제259호
개정	2017. 01. 19. 규정 제129호	개정	2025. 03. 27. 규정 제270호
개정	2017. 08. 29. 규정 제134호	개정	2026. 03. 16. 규정 제28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상 능력과 성과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경제적인 보상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보수는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가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기본연봉”이란 “별표 1”의 『기본연봉 인상률』등을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4. “성과연봉”이란 전년도 근무평정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 01. 28.>
5. “연봉월액”이란 연봉을 12분의 1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6. “연봉의 일할 계산”이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01. 28.>
7. “부가급여”란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 03. 27.]

제2장 연봉 산정 및 계약체결

제4조(연봉) ① 원장의 연봉은 부천시장과 체결한 성과계약서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② 직원 연봉은 기본연봉에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한다.

③ 직원의 기본연봉은 전년도 기본 연봉에 “별표 1”의 「기본연봉 인상율」을 반영하여 정한다.

④ <삭제 2019. 07. 09.>

[전문개정 2015. 01. 28.]

제5조(초임연봉의 산정)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초임연봉은 「신규채용 초임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며, 원장은 매년 부천시의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신규채용 초임기준표」를 별도로 관리한다.

② 채용공고상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초임 기본연봉은 “별표 2” 「경력환산 기준표」 및 「신규채용 초임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단, 경력환산은 채용 공고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하며, 월 단위 기간은 미반영하고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경력 하나만 반영한다.

③ 원장의 초임 기본연봉은 임용예정자의 경력, 유사기관 기관장 등의 연봉을 비교 분석하여 부천시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5. 01. 28., 2019. 07.09.]

제6조(승진시의 연봉산정) <삭제 2013. 03. 27.>

제7조(연봉의 조정) ① 원장은 승진, 전직, 전보, 파견, 휴직, 징계 등 연봉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연봉의 조정 시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원장은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본연봉의 5% 범위 내에서 인상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01. 28.]

제8조(근무평정 결과의 연봉반영) ① <삭제 2018. 12. 28.>

② 직원의 성과연봉은 “별표 9의” 「직원의 성과연봉 책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8.>

[전문개정 2015. 01. 28.]

[제목변경 2018. 12. 28.]

제9조(연봉계약서의 작성) 연봉계약서는 「취업 규정」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하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 진흥원과 직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22. 01. 07.>

제3장 연봉의 지급

제10조(지급일) ① 연봉월액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퇴직 또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연봉계산) ① 연봉월액은 법령과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 채용, 승진, 감봉, 퇴직 등의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1.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병역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3. 직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된 경우

[전문개정 2015. 01. 28.]

제12조(결근기간의 급여 삭감) 결근한 직원의 결근일수가 연차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연봉월액의 일액을 삭감한다. <개정 2017. 12. 12.>

[제목개정 2017. 12. 12.]

제13조(휴직기간 중의 급여) 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게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전염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8할을 지급하며, 업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직위해제기간중의 급여지급) 직원의 귀책사유로 징계를 받아 직위해제되어 출근이 정지된 직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출근이 허용된 직원에게는 급여의 감급없이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9.07.09.]

제15조(파견 근무자의 급여) 취업규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 등에 파견된 직원에 대하여는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제16조(성과연봉) ① 진흥원의 경영성과와 직원의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연봉과는 별도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03. 27.>
② 성과연봉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03. 27.>
[제목개정 2013. 03. 27.]

제4장 부 가 급 여

제17조(연차수당) 진흥원의 취업규정에 의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매년 말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03. 27.>

제18조(시간외근무수당) ① 직원 중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직원에게는 「근로기준법」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대상에서 원장과 실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2. 03. 12., 2015. 01. 28., 2020. 2. 13. 2026. 03. 16.>
② 시간외근무수당의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휴일근무수당)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대상에서 원장과 실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2. 03. 12., 2026. 03. 16.>

제20조(당직수당) <삭제 2011. 03. 11.>

제21조(기타 수당 등) ①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의 기타 수당 등을 지급한다.<개정 2022. 04. 04.>

1. 정액급식비 : 월 140,000원
2. <삭제 2013. 03. 27.>
3. <삭제 2013. 03. 27.>
4. <삭제 2015. 01. 28.>
5. 특정업무수행경비 : 월 80,000원 <신설 2018. 03. 14.>

② 정액급식비는 매월 20일에 급여와 함께 지급한다. <개정 2013. 03. 27.>

③ 맞춤형 복지비의 기본점수와 변동점수(근속연수, 가족수 등)로 구성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 03. 11.>, <개정 2015. 01. 28.>

④ 특정업무수행경비 지급대상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따르며,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8. 03. 14.>,<개정 2024. 07. 17., 2025. 03. 27.>

[제목개정 2015. 09. 23.]

제22조(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5. 09. 23.>

제23조(여비) 국내·외 여비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의2(직책급) 원장 및 실장(파견직 공무원 제외)에게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직책급을 차등 지급하며, 상위 직책을 겸임할 경우에는 상위 직책(직무대행 포함)에 해당하는 직책급을 지급한다. <신설 2012. 03. 27., 2018. 03. 14., 2021. 06. 15.>, <개정 2026. 03. 16.>

제23조의3(직급보조비)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0”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6. 03. 16.]

제23조의4(파견공무원 수당) 파견공무원에게는 직무에 상당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1”과 같이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6. 03. 16.]

제5장 퇴직연금

제24조(퇴직연금의 가입대상) ① 퇴직연금의 가입대상은 진흥원에 소속된 직원 중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으로 한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 중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은 제외한다.

제25조(퇴직연금의 운영방법) ① 퇴직연금의 종류 및 운용관리기관의 선정과 근로자 대표는 진흥원 직원의 과반수 동의로 정한다.

② 퇴직연금의 부담금 산정 방법 및 기간 등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퇴직연금 규약을 따른다. <개정 2026. 03. 16.>

③ 운영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진흥원이 부담한다.

제26조(운용상황교육) ① 진흥원은 매년 1회 이상 가입 직원에게 이 제도의 운용 상황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진흥원의 부담금 수준,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 상황
2. 가입 직원 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 비율 등 운용현황
3.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③ 진흥원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의 교육을 집합교육, 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제1항의 교육을 운용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퇴직연금규약을 따른다.

제27조(근속년수의 계산) ① 근속년수의 산정은 진흥원 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기간 계산 시 1년 미만의 단수는 월할 계산하며, 1월 미만의 단수는 1월로 한다.

③ 휴직 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업규정 제47조제1호 및 제2호와 제79조제1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2(퇴직금) ① 원장이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 금액은 재임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보수로 한다.

② 퇴직금 지급의 월평균 보수 산정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기본연봉, 부가급여(맞춤형 복지비 제외)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과 최종 1년간 지급된 성과급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재임기간의 산정은 원장으로 임명된 날부터 퇴임한 날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6. 03. 16.]

제27조의3(해임 등에 따른 퇴직금의 제한) ①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1/2를 줄여 지급한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조의2, 제30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의 1/2를 줄여 지급한 후 그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금의 1/2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6. 03. 16.]

제6장 보 칙

제28조(비상임 임원의 보수) ① 이사장에 대하여는 품위유지를 위한 직책수행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이 위촉한 명예박물관장에 대하여는 품위유지를 위한 직책수행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원장을 제외한 임원이 이사회에 출석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출석수당 또는 여비) 변상 할 수 있다.

④ 진흥원이 위촉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진흥원 직원 제외) 및 사회 인사(대학교수 및 문화산업관계자 등)가 진흥원 초청으로 강의 및 워크숍, 세미나 등의 진흥원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거나,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참석수당 및 여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0. 05. 25.]

제29조(단수의 처리) 연봉 계산 시의 단수처리는 1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제30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01. 28.>

제31조(준용) 직원의 연봉 지급과 재해보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과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06. 04. 14. 규정 제9호)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천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2. 22. 규정 제20호)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천시장의 승인을 받아 2007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2008. 03. 18. 규정 제30호)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천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23. 규정 제36호)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천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07. 13. 규정 제46호)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과 부천시장의 승인을 거쳐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03. 11. 규정 제63호)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천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03. 12. 규정 제75호)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천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07. 09. 규정 제79호)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천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03. 27. 규정 제87호)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천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01. 28. 규정 제1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천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연봉 인상률의 적용례) “별표 1”은 2016년부터 적용하며, 2015년의 기본 인상율은 공무원 급여 인상율을 적용한다.

부 칙 (2015. 09. 23. 규정 제1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08. 29. 규정 제1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0. 20. 규정 제1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천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12. 규정 제1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천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결근기간의 급여 삭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 03. 14. 규정 제16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천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8. 규정 제1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과 부천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3. 29. 규정 제18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7. 09. 규정 제18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천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봉인상률 적용례) 기본연봉 인상률은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3조(성과연봉 적용례) 직원의 성과연봉 책정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02. 13. 규정 제2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5. 25. 규정 제2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6. 15. 규정 제2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1. 07. 규정 제2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4. 04. 규정 제23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액급식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1호의 정액급식비 지급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 07. 17. 규정 제25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03. 27. 규정 제27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03. 16. 규정 제28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천시장의 승인을 받은 익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본연봉 인상률

구 분	내 용
연봉 인상률	<삭제 2018. 12. 28.>
기본연봉 인상률 (X)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과 진흥원의 경영성과, 물가지수, 공무원 보수 인상율 등을 반영하여 원장이 정하여 부천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
평정등급 차등 인상율 (Y)	<삭제 2018. 12. 28.>

경력환산 기준표

경력내용	적용률(%)		
	100	70	50
1. 공무원 및 군(사병) 근무 경력	전체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근무 경력 (직급·직위 경력 참조)	A	B	C
3. 대학교(국·공립, 사립) 근무 경력 (직급·직위 경력 참조)	A	B	C
4. 법인체 및 문화예술단체 근무경력 (직급·직위 경력 참조)			
- 법인회사, 비영리법인(사단법인 포함), 연구기관	A	B	C
- 문화예술단체	A	B	C
6. 채용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기간			전체
7. 채용직무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외국어 능력	외국어 능력 보유 당 1년 인정		
8. 전시 큐레이터, 디자이너 <신설 2017. 08. 29>	A	B	C

※ 환산기준 A : 채용할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경력이 있는 자

B : 채용할 직무와 유사한 직무 경력이 있는 자

C : 채용할 직무와 일부 유사한 직무 경력이 있는 자

※ <삭제 2017. 08. 29>

(별표 3) <삭제 2013. 03. 27.>

(별표 4) <삭제 2022. 01. 07.>

(별표 5) <개정 2013. 03. 27., 2019. 07. 09>, <삭제 2022. 01. 07.>>

(별표 6) <신설 2012. 07. 09., 2015. 01. 28., 2018. 03. 14. 2019. 03. 29., 2020. 02. 13., 2021. 06. 15.>
 <개정 2026. 03. 16.>

직책급 지급기준

구분	원장	실장
지급액	600천원/월	100천원/월

(별표 7) <신설 2013. 03. 27., 2015. 01. 28., 2016. 01. 18., 2017. 01. 19., 2018. 03. 14.>, <삭제 2019. 07. 09>

(별표 8) <신설 2013. 03. 27., 2014. 03. 19., 2015. 01. 28., 2016. 01. 18., 2017. 01. 19., 2017. 10. 20., 2018. 03. 14.>, <삭제 2019. 07. 09>

(별표 9) <신설 2013. 03. 27.>, <개정 2015. 09. 23., 2019. 07. 09.>

직원의 성과연봉 책정기준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지급인원	정원기준, 평정결과 상위 10% 이내에 해당되는 자	정원기준, 평정결과 상위 10% 초과 25% 이내에 해당되는 자	정원기준, 평정결과 상위 25% 초과 75% 이내에 해당되는 자	정원기준, 평정결과 상위 75% 초과 90% 이내에 해당되는 자	정원기준, 평정결과 상위 90% 초과 100% 이내에 해당되는 자
지급액	지급 기준액의 120%	지급 기준액의 110%	지급 기준액의 100%	지급 기준액의 90%	지급 기준액의 80%

(별표 10) <신설 2026. 03. 16.>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23조의3 관련)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지급액 (월)	70,000원		50,000원		30,000원	

(별표 11) <신설 2026. 03. 16.>

파견공무원 수당 지급 구분표(제23조의4 관련)

구분	대상	지급금액	지급대상
파견공무원 수당	◦ 6급 이상	◦ 월 300,000원	법령 등에 의하여 공공기관 등에 파견되어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받는 보수 이외에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수당, 경비 등을 지급받는 공무원